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과 그 가족 추이 (2010~2023)

이상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최서리 연구위원

국내에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것은 1984년(9-11(고용)자격 신설)부터이다. 현행 체류자격 체계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취업자격은 일반적으로 E계열로 구분되고 2024년 기준 총 10개의 취업자격(대분류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취업자격 소지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점차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취업자격 소지자보다는 국내 노동시장에의 접근성이나 이동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F-2, F-4, F-5, F-6) 소지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취업기반으로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취업자격 외국인의 가족 현황은 데이터의 한계로 명확히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통계브리프는 특정 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변경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유량통계의 필요성, 체류민원 처리 시 외국인 종사 업종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 가족 통계 보고방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외국인 취업(고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신규 도입 쿼터는 16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이고, 기존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취업분야 역시 음식점 업,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단기순환에 따 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련기능인력(E-7-4)의 도입 규모를 혁신적으로 확 대1)할 것을 명시하여 앞으로 취업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부 취 업자격의 외국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거주나 영주자격을 취득할

^{1) 2018}년 600명 → 2020년 1,000명 → 2022년 2,000명 → 2023년 35,000명

²⁾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총 10개로 구분해 운영

수 있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최근 외국인 취업(고용)정책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취업자격 외국인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취업자격', '취업가능', '취업기반'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다. 먼저 ①취업자격 외국인은 E계열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의미하고, ②취업가능 외국인은 - 취업 자격자를 포함하여 - 국내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취업가능 외국인은 취업자격자에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자가 더해진다. 더불어 ③취업기반 거주자나 영주권자는 취업에 기반하여 거주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국내 거주자와 영주 권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 세부약호별 현황은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2010~2023년 12월 말「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분석 에 활용하였다. 더불어 재외동포(F-4)의 경우「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 자격별 추이 (2010~2023)

국내 취업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자격은 크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 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과 단순노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비전 문취업(E-9). 선원취업(E-10))으로 구분된다.3)

단위: 명, % 70,000 20.0% 18.0% 60,000 16.0% 50,000 14.0% 12.0% 40,000 10.0% 30,000 8.0% 6.0% 20,000 4.0% 10,000 2.0% 0.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연구(E-3) ■ 교수(E-1) ■ 회화강사(E-2)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전체 취업자격 외국인 중 E1~E7 비율 ■ 특정활동(E-7)

〈그림 1〉E-1~E-7 취업자격 외국인 추이 (2010~2023)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0-2023)

³⁾ 계절근로(E-8)의 경우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먼저 2010년 이래 국내 전문취업(E-1~E-7)자격으로 등록된 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약간의 주목할 만한 차이를 설명하면, 2012년 정점을 찍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회화강사(E-2)는 2010년 최고치(22,800명)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절반 수준(12,468명)까지 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격(E-1~E-10) 외국인 중 전문취업자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17.2%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E-1~E-7자격자의 전체적인 규모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데, 통 게 수치만을 볼 때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거주나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자격자 규모 에서 빠지거나, 다른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고 아예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거주나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최서리, 2023; 안은진 외, 2024) 사실상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1이나 E-3자격으로 국내 취업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창원 외, 2021a)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자는 '낮은 연봉'을 국내 계속 체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E-1~E-7자격자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 40,147 명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데, 이전까지 2만여 명 수준이던 E-1~E-7자격자 규모 가 2023년에 유례없이 44,310명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3년 6월 중소기업들의 인력 난 해소를 위해 기존 1~2천 명 안팎이던 숙련기능인력(E-7-4)의 연간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E-1~E-7자격자 중 특정활동(E-7) 자격 비중을 살펴보아도, 2012년에는 24.4% 에 불과하던 수치가 2023년에는 64.6%로 거의 2/3 수준에 달한다.

70,000 70.0% 60.000 60.0% 50,000 50.0% 40.000 40.0% 30,000 30.0% 20,000 20.0% 10,000 10.0% 0.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F1~7 - F7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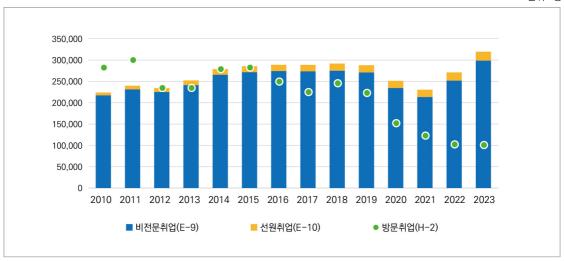
〈그림 2〉E-1~E-7자격자 중 E-7자격자 비율 (2010~2023)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단위: 명, %

〈그림 3〉E-9~E-10자격자와 H-2자격자 추이 (2010~2023)

단위: 명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비전문취업자(E-9)와 선원취업자(E-10)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전까지는 대체로 증 가세를 보인다. 2010년 223,824명이던 비전문인력(E-9, E-10) 외국인은 2023년 현재 319,449명 까지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격 외국인은 2019년에서 2020년 급격 히 감소하였고, 단순기능직 종사자(E-9~E-10)는 2021년에는 230,576명까지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 앞서 살펴본 E-1~E-7자격자는 2021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E-9~E-10자격자는 지속 감소하였다. 2023년 319,449명으로 E-9~E-10자격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쿼터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2023년 E-9 자격 쿼터는 총 11만 명으로,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며,4) 2024년에는 16 만 5천 명까지 쿼터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선원취업(E-10)자격자의 경우 2020년에 그 수가 일 부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3년간의 방문취업자(H-2) 추이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상당 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방문취업 사증(자격)에 대한 발급 상한선이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30만 3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2011년까지 30만 명을 유지하다가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30만 명보다 훨씬 낮은 20만 명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방문취업자의 고령 화 및 재외동포(F-4)자격으로의 전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이창원 외(2021b)의 연구에

⁴⁾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48

⁵⁾ 관계부처 합동. 2022.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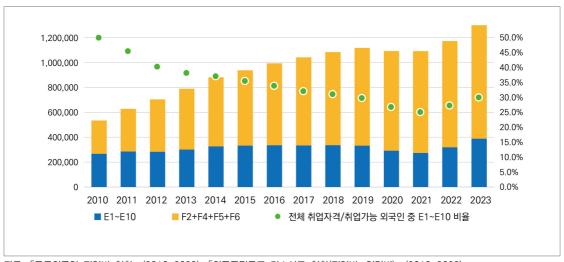
따르면, 2009년까지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중 중국동포는 10%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2020년 기준 중국동포는 전체 재외동포자격자 중 75.2%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방문취업자의 84.6%가 중국동포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방문취업자가 재외동포자격으로 전환한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과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 추이 (2010~2023)

현재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는 E계열 이외에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모두를 포괄하여 취업가능 외국인으로, 그중에서 도 취업자격자를 제외하면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으로 지칭한다. 2010년 기준 국내 취업자격 (E-1~E-10)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266,374명이었으며 기타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F-2, F-4, F-5, F-6)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총 267,962명이었다.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에 체류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비중이 계속 변화하여 2021년에는 취업자격자의 비 중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정부가 비전문취업자 쿼터를 크게 확대하기로 발표하면서 2023년 기 준 전체 취업가능자 중 취업자격자 비율이 29.9%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0년과 비교할 때 두 집단 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타 취업가능 집단 71.1%). 여기에는 2013년 이후 E-1~E-7 소지자의 감소세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 수

〈그림 4〉취업자격 외국인과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 추이 (2010~2023)

단위: 명, %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지역별, 연령별)」(2010-2023)

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2010년 267,962명이었던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 수는 2023년 911.725명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주(F-2)자격을 제외한 기타 취업활동 가능 자격 (F-4, F-5, F-6) 소지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외동포(F-4)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취업가능 외국인 중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 볼 수 있다.6 이는 취업자격 외국인뿐 아니라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의 취업(고용) 실태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단위: 명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거주(F-2) ■ 재외동포(F-4) ■ 영주(F-5) ■ 결혼이민(F-6)

〈그림 5〉 기타 취업가능 외국인 추이 (2010~2023)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지역별, 연령별)」(2010-2023)

국내 전문취업자격 외국인과 취업기반 거주자 및 영주권자 추이 (2010~2023)

정부는 전문취업자격 외국인에게만 거주 혹은 영주자격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전문취업자격자(E-1~E-7)와 취업을 근거로 거주 혹은 영주자격를 취득한 사람의 추이를 비교 하고자 한다. 국내 전문취업자격자(E-1~E-7) 규모는 2012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 2020년에는 최근 10년 중 최저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2023년 말 기 준 68,643명까지 늘어났다. 취업기반 거주자(F-2-6, F-2-7, F-2-99) 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3%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보면 전문취업자격 외국인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주 어

⁶⁾ 거주(F-2)자격 소지자의 경우 결혼이민(F-6) 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2012년부터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안은진·최서 리, 2024).

려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1,673명이었던 취업기반 영주권자는 2023년 현재 4,729 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 폭은 완만하다. 현재 유량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 은 어렵지만, 취업자격의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높거나.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혹은 취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취업 기반 '영주권자'가 완만하나마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취업기반 '거주자' 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거주자의 국내 체류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68,643 12,000 70.000 10,000 60,000 50,000 8,000 42,550 40,000 6,000 30,000 4.000 20,000 2,000 10.00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취업기반 거주자(F-2-6, F-2-7, F-2-99) → 취업기반 영주권자(F-5-1, F-5-9, F-5-10, F-5-11, F-5-15, F-5-16, F-5-S1)

〈그림 6〉 전문취업자격 외국인과 취업기반 거주자 및 영주권자 추이(2010~2023)

단위: 명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국내 취업가능 외국인의 가족 추이 (2010~2023)

국내 전문취업자격(E-1~E-7)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 하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7) 이 중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동반(F-3) 자격의 세부약 호를 살펴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가족 은 7개의 약호(F-3-11~F-3-17)로 구분하여 그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호 구분이 2021년(3월 말 기준)부터 시작되었고, 이전에는 동반(F-3-1)과 FTA동반(F-3-91)의 두 가지

⁷⁾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E-1~E-7자격으로 변경한 자의 경우 GNI 이상으로 그 기준이 완화된다.

유형으로만 통계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즉, 2020년까지 전문취업자격(E-1~E-7) 배우자와 자녀는 F-3-1이라는 세부약호로 뭉뚱그려 통계가 생산되었고, 심지어 그 통계치에는 문화예술(D-1)이나 유 학(D-2), 일반연수(D-4) 등 자격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F-3-1의 통계는 2023년 말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리하면, 현재 전문취업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3-1 통계 중 일부(확인 불가),8) 그리고 F-3-11~F-3-17 통계의 합으로 확인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그 총 합은 28,920명인데, 이 중 대부분(28,594명)이 전문취업자격자의 가족인지 확인이 안 되는 F-3-1 자격 소지자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F-3-1과 F-3-11~F-3-17 자격자의 총합은 20.418명, 23,881명, 28,920명으로 천 명 단위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F-3-1의 증가분에 기 인한다. 2021년부터 전문취업자격자의 가족은 별도 세부약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가 증가하였 다면 F-3-1이 아닌, F-3-11~F-3-17의 합이 증가했어야 한다. 이렇듯 초청자와 피초청자를 매칭하 여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2010년부터의 전문취업자격 소지자 배우자와 미성 년자녀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나마 현재 상대적으로 명확히 파악 가능한 통계는 취업에 기반하여 거주나 영주자격을 받은 사 람의 배우자 및 자녀 정도이다. 취업기반 거주 및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 규모는 2010년 3,033명 정도였으나, 2023년 59,739명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최서리, 2023; 안은진·최서리, 2024 참조).

단위: 명 60,000 40,000 2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영주가족(F-2-3) ■ 공익은퇴가족(F-2-13) ■ 점수가족(F-2-71) ■ 부동가족(F-2-81) ■ 영주가족(F-5-4) ■ 점수가족(F-5-18) ■ 부동가족(F-5-19) ■ 영주출생(F-5-20) ■ 공익은퇴가족(F-5-22)

〈그림 7〉취업기반 거주 및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 추이 (2010~2023)

자료: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2023)

⁸⁾ 연구자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 통계분석의 정책적 함의

위의 국내 취업자격 및 취업가능 외국인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통계 및 조 사통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취업자격 및 취업기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이력이나 출국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유량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취업자격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여전히 취업자격자의 국내 정착 비율은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취업자격자가 거주나 영주자격으로 자격 변경을 한 것인지, 출국해 버린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는 '특정 시점' 체류자격별 현황(저량통계)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동 안 체류자격 변경(증감)에 대한 유량통계가 필요하다.

둘째, 취업자격자 외에 국내 취업가능한 외국인의 인적 특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취업자격 외국인의 비중이 컸으며, 이들의 취업 분야(산업)나 이 직 등은 정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시장에서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외국인의 규모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이해가 유입정책이나 통합정책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종과 직종 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공개된 데이터상으로 대분류 업종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표본 설계상 한계, 개인 정보 특정 문제 등의 이유로 업종(중분류)과 직종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 체적인 종사 업종 및 직종은 원격접근서비스(RAS)나 이용센터서비스(RDC)를 통해 별도 데이터를 신청 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결과표로만 자료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배우자(F-2-1)를 제외하고, 거주 (F-2)와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거주자격 데이터를 따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이며 해당 자격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법무부 행정통계 수집 및 제공 시 업종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취업자 격 외국인이 등록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체류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업자등 록번호는 확장 가능성이 큰 연계키로, 예를 들어, 이를 통해서 해당 사업체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를 알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자리) 수준의 업종 정보도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만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방대한 외국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법무부의 정 보 관리는 결국 정부의 이민정책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민원 을 담당하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업종 정보 를 즉시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국적

이나 체류자격, 성별, 연령별 외국인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는 향후 취업이 민정책 운영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취업자격 및 취업가능 외국인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이들 가족에 대한 통계 정보의 명확한 전달이 중요하다. 현재「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가족에 관한 행정통계는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세부약호에 대한 설명이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수치의 정확성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2021년부터 각각의 전문취업자격 소지자 가족의 세부약호를 별도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이나, 언론이나 관련부처가 국내 취업가능자의 가족 현황을 개략적이나마파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공된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비자 내비게이터.

안은진, 최서리. 2024. "2010~2023년 국내 거주자격 소지자 추이와 특징".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이창원, 최서리, 김도원, 최희정, 박성일. 2021a. 「국내 외국인 연구자 실태조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이창원, 최서리, 권채리, 박미화, 조하영. 2021b.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정책 연구보고서.

최서리. 2023. "2010~2023년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 추이와 특징".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통계정보

활용통계	①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등록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국내 체류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을 한 외국인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지역별, 연령별)」의 외국국적동포
작성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작성유형	보고통계
공표주기	①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분기별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지역별, 연령별)」: 분기별

집필자 | 이상지·최서리 문의 | 02-3788-8031 발행인 | 우병렬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4년 4월 주소 | 08100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인용 이상지·최서리. *2024.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과 그 가족 추이 (2010~2023).*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2.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이슈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